

2차 KICCE 정책토론회 의 릴레이 토론회 2차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2023. 7. 28.(급) 15:00 - 18:00 | 국회 제5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주관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후원

교육부, 실천교육교사모임, 육아방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유아특수학교장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단체명가나다순)



2차 KICCE 정책토론회

릴레이 토론회 2차

특수교육대상 영유이를 위한 유이학교를 제안하다!

l행시일정

시간	세부내용			
14:30~15:00	현장 참여 입실 완료 및 유튜브 접속			
15:00~15:10	개회/국민의례			
15.10.15.40	인사말	사회 ।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5:10~15:40	축 사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동용 국회 교육위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15:40~15:50	사진촬영 및 휴식			
	발제 및 토론			
	주제발표	좌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 및 선정 배치에 대한 논의 김경민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15:50~17:10	2 ₁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에 대한 담론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3 ₁ 유 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과 행재정적 정책 제안 박신영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			
	4 ₁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종합토론			
17:10~18:00	이은미 청주 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연합회 회장			
	선인수 수도사랑의 학교 교장 정길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연구관			
18:00		니 및 폐회 전달식(→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CONTENTS

인사말

- ▶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 ▶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축 사

-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 **서동용** 국회 교육위 의원
-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주제발표

1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 및 선정 배치에 대한 논의 ···································
2 ₁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에 대한 담론 ·······13
▶ <mark>정원화</mark>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3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과 행재정적 정책 제안20
▶ 박신영 ।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
4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31
▶ 김현숙 1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종합토론
▶ 이은미 」 청주 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연합회 회장41
▶ 신인수 ₁ 수도사랑의 학교 교장 ·············44
▶ 정길순 ।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46
▶ 이병숙 . 교육부 유부통한추지단 연구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유보통합은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실현되길 바래왔던 숙원입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실제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각기 다른 자격 기준이나 처우 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가운데서 특수교육 제공자인 유아특수교사와 보육 제공자인 장애영유아보육 교사의 자격이나 처우 통합에 대한 논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라는 커다란 틀에 묶여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당사자 및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 조기 개입이 이후의 발달과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유보통합 문제 그리고 해당 교사들의 통합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유보통합으로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들이 이후에 겪게 될 어려움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 및 당사자 분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나눠주신 이야기들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앞장서 만들어주신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축사 및 후원 등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 니다. 오늘 토론회가 2차 '릴레이' 토론회인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유보통합을 둘러싼 쟁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강민정**





안녕하십니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입니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신 토론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쟁점속에서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자칫 소홀해 지고 소외되기 쉽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교육하는 유아특수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온전한 유보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를 위한 차별없는 지원' 이라는 유보통합의 핵심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선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게 수준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아특수교육은 영아시기부터 시작됩니다. 생애 가장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빠른 시기에 적절한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게 맞는 특수교육적 개별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교육과정, 교재교구, 보조기기, 각종 지원서비스, 인적 자원, 심지어 교사의 발문 하나하나까지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하여 적용함으로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을 끌어내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유아특수교육은 보육을 포함한 의도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내는 전문적 교육활동입니다. 그렇기에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통해 차별없는 교육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육 및 보육을 제공받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고민과 다각도의 고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모든 과정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아특수교육의 이러한 특성이 섬세하게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차 정책토론회가 끝나면 다음으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릴레이 깃발을 넘기게 됩니다. 이 연속된 토론의 흐름과 같이, 유아특수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영유아도 유보통합의 흐름 속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함께 참여하여 유보통합이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데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도 그 안에서 같이 발맞추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 안녕하십니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30일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 교육. 돌봄'실현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단 출범, 선도교육청 선정,



공동선언식까지 빠르게 추진되어오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역시 포함되어야 하나 그동안의 추진 과정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더욱 뜻깊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강민정 국회 교육위 의원님, 축사를 해 주시는 서동용 교육위 의원님,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님,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 연대회장님,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또한,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님,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현 연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흔쾌히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김경민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님,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님, 박신영 경기도교육청 장학관님, 종합토론을 맡아주신 이은미 청주 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연합회 회장님, 정길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선생님, 신인수 수도 사랑의 학교 교장 선생님,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장님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치원 특수교육의 현안을 확인하고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들과 학부모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무상교육, 의무교육대상자인 우리 아이들이 위상에 맞는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장애영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 그리고 이들을 위한 특수교사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도록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육아정책연구소 제2차 정책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강민정 국회 교육위 의원님,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축사를 맡아주신 김철민 교육위 위원장님, 서동용 교육위 의원님,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님,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님,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올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입니다.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학부모의 정책적 지지가 중요하고, 특히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차별 없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특수 및 장애영유아 관련 유보통합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소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논의 과정을 통해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김경민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님,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님, 박신영 경기도교육청 장학관님,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님, 종합토론을 맡아주신 이은미 청주 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연합회 회장님, 정길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선생님, 신인수 수도사랑의 학교 교장선생님,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연구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사회를 맡아주신 박은정 부연구위원, 그리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연구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면/비대면으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입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민정 의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8명이라는 전례 없는 인구절벽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과 교육·돌봄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유보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경우 특수교사 인력 부족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교사자격 통합 방안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난관이 산재해있습니다. 장애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오랜 기간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토의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애 영유아 지원과 교육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서비스와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사회 등 국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방향을 논의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장애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 교육위원장)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정책토론회에 오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강민정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조,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해주신 모든 기관단체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민 중부대 교수님,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님, 박신영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님과 종합토론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은미 청주 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연합회 회장님, 신인수 수도사랑의학교 교장, 정길순 대전특수교육 지원센터 교사,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연구관님께는 준비해온 현안과 지식을 토론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동 삶의 질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장애 영유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장애 영유아들의 특수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 영유아의 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지금도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과 더불어 연구, 정책 방향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현재의 시점에서, 이해당사자 주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자격 통합과 양성체계, 교육기관 운영체계, 행·재정적 개편은 물론이고, 학급설치 기준과 학생 수에 따른 교사배치기준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 영유아와 유보통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장애 영유아의 특성을 세심히 고려한 교육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시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28일 국회 교육위 의원 **서동용**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릴레이 2차 토론' 개최를 축하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특수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며 혼 신의 힘을 쏟고 계신 특수 교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의미 있는 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민정 의원님과 행사를 주 관해 주신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장님,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님,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님, 발표자·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지역이나 성별, 장애, 소득수준 등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개개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또 영유아 때부터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수교육 장애 영유아와 교사 모두가 만족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부모, 영유아 교육·보육계 관계자와 각 분야 전문가, 시도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으며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영유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이 제안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아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정책토론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의미있는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강민정 국회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조,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사를 맡아주신 김철민 교육위 위원장님, 서동용 교육위 의원님,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님,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님,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정책들이 제대로 다루어져야 장애, 비장애 영유아들이 차별없는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2025년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한 이 시점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정책들이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민 중부대 교수님,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님, 박신영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회장님과 종합토론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은미 청주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연합회회장님, 신인수 수도사랑의학교 교장, 정길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연구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장애 영유아와 유보통합 논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 협력하여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유보통합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혐의회 회장 **조희연** 세상에 어떤 일이든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자녀가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부모는 마치 '암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들 말한다. 지금은 성인이 된 제 아이를 교육시키고자 노력했던 과거보다 오래전부터 자녀가 장애가 있더라도 업고라도 다니겠다는 부모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입학을 수없이 거절당해왔다. 한국에서도 초등특수교사와 중등특수교사가 생기고 이후 입증된 조기교육의 효과에 의해 유아특수교육이 본격적으로 태동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조기교육이 절실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은 그만큼 늦게 시작되었고,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인식도 낮았습니다.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들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이 시기상조라는 견해에도 수없이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해 온 부모들의 힘으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였고,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무상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램에도 유치원 유아 수용계획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정원 외 배치'를 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이면서도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시기를 지나오다가 최근 3-4년간 '정원 내 배치의 현실화'가이루어지면서 교육기관의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2008년 3,236명에서 2022년 기준 8,607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영유아기 부모님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요구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을 15년 이상 2,0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있으며,어린이집에는 학령기 6-12세 과연령 아동을 제외한 9,533명의 장애영유아가 입소하여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당면 과제의 0-5세의 통합은 조기교육이 필요한 시기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뿐 아니라 장애영유아와 장애위험(at risk)영유아 및 발달이 지연되거나 경계선 유아의 교육에도 도움이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특별함'에 대한 수용은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에서 강제한다고 하여도 영유아기 부모님의 자녀 수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것이 그 시기의 부모의 양육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MZ 부모님들은 '장애', '장애아', '장애반'이라는 용어를 불편해 한다.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으로 특수교육은 맞춤형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이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결함에 초점을 맞춘 '장애' 보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맞춤형 교육지원'이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장애'보다 '특별함'이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망의 토대가 되기를, 힘이 모이는 중심축이 되기를 바란다. 유보통합의 첫 사업으로 장애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다며 '특수교사 자격 취득'이라는 특별양성과정 화두를 던진 국가가 종사자 입장이 아닌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본질을 보는 혜안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하여 이후 추진과정에집단의 이해 관계가 아닌 질 높은 교육, 보육의 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3년 7월 2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윤종술**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고선순입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그리고 강민정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유보통합 릴레이 토론회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 학교를 제안하다』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육아정책연 구소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금일 토론회의 사회, 발제,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진행되어 온 유보통합의 논의 과정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이유입니다. 영유아기에 적절한 조기 개입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와 장애 영아는 다양한 놀이 참여, 안전한 생활, 교육의 질 등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영유아기 특수교육기관의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가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유아 영유아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관한 유아특수 교육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현장감 있게 다루게 됩니다. 미래 유아학교가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모든 영유아들이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구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8일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고선순**





주제 발표

- 1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 및 선정 배치에 대한 논의
 - ▶ 김경민 |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 2 |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에 대한 담론
 - ▶ 정원화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 3 |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과 행재정적 정책 제안
 - ▶ 박신영 │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
- 4 |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 ▶ 김현숙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적 논의 및 선정 배치

김경민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릴레이 토론회 2차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적 논의 및 선정 배치

중부대학교 **김경민**

투수교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들은 유아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 성인기의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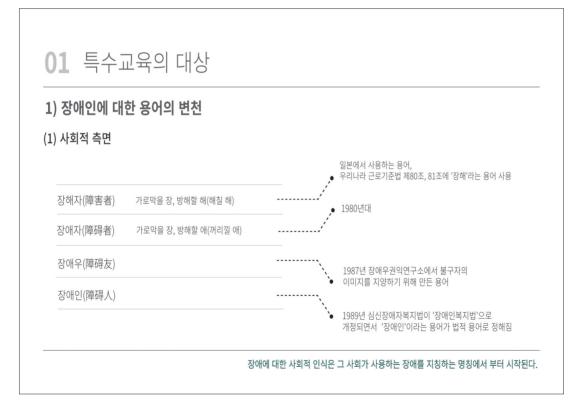
이를 위해

첫째, 유아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유아수용계획을 세우고

둘째, 교육부가 인정하는 전문 자격을 지닌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셋째,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01 특수교육의 대상

1) 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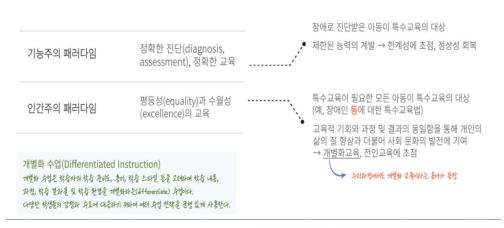
(2) 교육적 측면



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한 지원은 폭력일 수 있다.

01 특수교육의 대상

2)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은 특성 사실, 사건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변화시킨다.

01 특수교육의 대상

3)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

(1)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의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창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정의)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B-2至2924 OH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mark>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mark>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이며 발달지체를 제외하면 모두 장애의 명칭으로 구분된다.

01 특수교육의 대상

3)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

- (2)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특수성
 -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一 능력의 여부에 따라 진단함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랑"

또래에 비해 <u>현저하게 지체</u>되어



현재하게 자체됨의 기준은 영화한 것이며, 현재하지 않은 영우(위영군)는 독午교육 대상이 될 수 없는가? 현재한 자체는 목수교육적 요구와 양력산통하는가?

특별한 <u>교육적 조치</u>가 필요한



고혹적 성화와 고육적 조치의 차이정은 무엇인가? 고홍적 조치는 혹수고육와 옥수고육 완전 사비를 모두 포함하는 지원의 개정인가? 고홍적 성화가 아닌 조치모만 이행된다면 개별화고육의 목품은 어떻게 달성화야 하는가?

특수교육법에서 발달지체 영유아는 그들이 가진 special needs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볼 수 있음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선별과 선정 과정



202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은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를 위해 교육, 복지, 의료체계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하였다.

02 특수교육의 방법

2) 선별과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



장애의 조기 발견은 장애의 심화를 예방하는 노력이다.

2) 선별과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

(1) 의료기관에서의 선별 과정 3 의료

의료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소아재활과, 소아신경과, 소아정신과 등에서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지역 보건소에서 심화평가 권고

부모 상담과 교육 및 치료지원 관련 안내 전담 기구 필요

축아총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에서 역할 수행 가능

02 특수교육의 방법

2) 선별과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

(2) 교육기관에서의 선정 과정



부모동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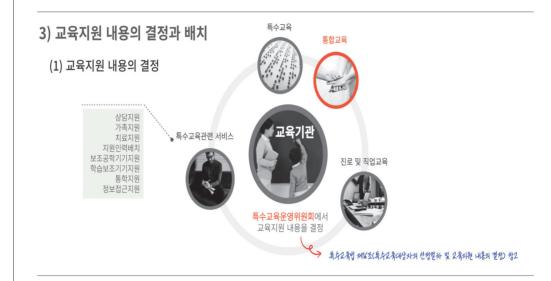


전담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상자 자료 제공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선별과 진단에 대한 부모의 충격과 망설임이 교육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복지기관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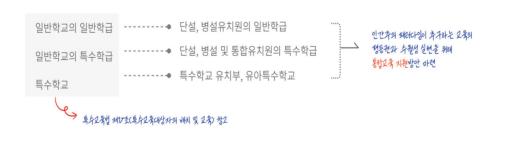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떤 유형의 교육기관에 배치되더라도 교육지원 내용에 반드시 통합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2 특수교육의 방법

3)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과 배치

(2)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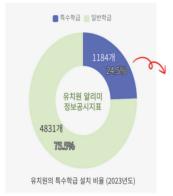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 능력 ·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ark>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mark>에 배치

3)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과 배치

(3)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



202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 : 27년까지 400개 확충(32.8%)
 - → 사립유치원에서 특수학급 설치 권장
 - → 신설 유치원에 특수학급 의무 설치
- 통합유치원 증설 : 27년까지 17개로 확대
- 특수교사 수 증원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배치 외에 통합학급에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 교사 배치

02 특수교육의 방법

3)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과 배치

- (4) 유아학교의 당위성과 해결과제
 -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mark>의무교육 대상</mark>자

하 유아교육법시행정 제17조 (유아수용계획) 창고

- 유아수용계획에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 → 장애유아를 위한 수용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 발생
-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매년 0~2세 영아의 심화평가 권고 비율을 고려해야 함 이들 중 75%는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추정치로 수용계획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확대 ('2023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
- 특수학급 증설에 앞서 배치 단계에서부터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기

2023.02.15일에 전교조와 유치원노조, 유치원교총은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를 출범

03 마무리(제언)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개념과 선정

- 특수교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가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u>할</u> 권리 보장
 - → 인간주의 패러다임의 교육평등성과 수월성의 이념 실천
 - → 발견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관의 거버넌스 구축
 - → 경계선(위험군) 영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
 - → 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특수교육 대상자 재정의, 법령 등)정비, 재정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배치

- 특수학급 증설 필요
 - → 유아수용계획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포함
- 통합교육의 질 재고
 - → 유아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 → 유아학교에 통합을 위한 유아특수교사 추가 배치

교육은 인간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3).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부

교육부 (2023).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23~2027).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박민영 (2007). 주요국 장애차별금지법의 비교법적 연구.공법학연구,8(1),195-222.

박영제, 홍정숙 (2019). 장애명칭붙임과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 특수교육, 18(1), 83-110.

반건호 (2020).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역할. 신경정신의학, 59(3), 176-184.

조광순 (2005). 국내 발달장애 유아 진단평가의 문제점 및 과제. 언어치료연구, 14(1), 127-148.

조시오, 안관수 (2013), 인본주의에 기초한 평등성과 수월성이 균현잡힌 교육정책 방안, 한국디지털정책학회

UNESCO (2016), 교육 2023 인천선언과 실행계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ESCO (2015). 모두를 위한 교육 2000-2015: 성과와 과제: 요약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기타 : 통계청 자료, 유치원 정보공시

오늘의 약속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밝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기준으로 살펴보는 유아학교와 유아특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

정원화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자격 통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

- 1)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차이로 인한 교사 전문성 차이
- 2) 타 교사자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3) 유아특수교육과 배출 졸업생의 임용난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고려한 자격 통합에 대한 대안

- 1) 유아특수교육기관 확대 및 유아학교 설립을 통한 유아특수교육 수요 충족
- 2)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
- ▶ 유보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유아학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선 후에 그 안으로 보육이 합류해 유아에게 교육과 보육을 조화롭게 제공하는 형태로 실행되기를 제안함
- ▶ 초등돌봄과 같은 종일반의 형태로 보육이 합류하면, 장애영유아 역시 교육과 보육의 흐름에서 배제되는 일 없이 다른 유아들과 동등하게 어울려 안정적으로 질이 확보된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1. 서론

유아교육의 '처음학교로'라는 슬로건은 유아교육이 가지는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 역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장애영유아에게 처음으로 공교육을 경험하게 하고, 공교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발달을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공교육이란 어디에서 누구에게 교육을 받든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보장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내용의 질을 보장받고, 국가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시험을 통해 채용한 교사를 통해 교육 방법의 질을 보장받습니다.

한편 유아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의 분야 중에서도 조기중재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위상을 가집니다. 장애아동의 발달은 조기에 개입할수록 중재 효과가 크고 예후가 좋아지는데, 그 과정을 가장이른 단계에 수행하는 것이 유아특수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시기에 적절한 중재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장애아동은 이후 발달에서도 대개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성의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는 유치원교사도 교육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유아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주체인 유아특수교사, 그 자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격 통합에 저희전국특수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노조연맹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제공자인유아특수교사와 보육 제공자인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격 통합이 실현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려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를 유아특수교사로, 유치원 정교사를 유치원교사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지칭하겠습니다.

II. 본론

1. 유아특수교사, 유치원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보육교사의 법적 근거

자격 기준에 대해 논하기 위해 먼저 자격 기준의 법적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류	특수학교 정교사(유치원)	유치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육교사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 2항	유아교육법 제2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2조 및 시행령 제5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 3항
내용	②교사는 정교사(1급·2 급)·준교사로 나누되, 별 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 급)·준교사로 나누되, 별 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 제22조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한다. 시행령 제5조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되는 장애어동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위한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자부장 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 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의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의 이상을 취득한 사람고 단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 당하고 모든 이상의 학교로 당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의 이상을 취득한 사람

종류	특수학교 정교사(유치원)	유치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육교사
			1. 「영유이보육법」제 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학점인정 등에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 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 정을 이수한 사람
세부 이수 분야 및 학점	○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 점 이상: 기본이수과 목 21학점(7과목) 이 상 포함 - 유아교육(유치원), 초등 교육(초등), 표시과목 (중등) 관련 38학점 이 상: 기본이수과목 21학 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 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 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모함이는 교직소양: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 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2012.8.4. 이전에 편 입하거나 입학한 사 람: 8과목(16학점) 이 상 이수 → 2012.8.5. 이후에 편 입하거나 입학한 사 람: 8과목(24학점) 이 상 이수	가. 교사 인성 2과목 (6 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9과목 (27학점) - 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다. 보육 실무 2과목 (6 학점)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1) 유아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 근거 차이점

유아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에서 가장 큰 차이는 근거하고 있는 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지만, 유아특수교사는 다른 초·중등교사 및 특수교사와함께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수해야 하는 학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유치원교사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합해 총 7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유아특수교사는 10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이는 일반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수교육의 고도화된 전문성양면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 하겠습니다.

2) 유아특수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의 자격 근거 차이점에 대 한 비교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에 더해 24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육 교사의 51학점에 더해 총 75학점이 됩니다. 내용이나 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했을 때 유아특수교사와는 최소 이수 학점에 있어 48학점의 차이가 납니다. 한편으로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와 숫자 상으로 21학점의 차이를 보입니다.

학점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확연합니다만, 각 주체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단순히 학점이라는 숫자만으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해당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보육교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이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교라는 형태의 고등 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의 방법으로 필요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기본 자격을 공유하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자격에 추가로 8과목만을 더 이수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한 학기인약 15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유특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통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러한 자격요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체제 전환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 내에서 유아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보육교사의 자격 체제도 한꺼번에 묶여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교사 자격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차이로 인한 교사의 전문성 차이

앞에서 다룬 내용에 이어지는 문제의식입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보육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과정 내에서 보육에 대한 소양만을 기를 뿐, 교과교육 및 교직에 대한 어떠한 교육 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발달을 교육과정 속에서 촉진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난점 에 대한 충분하고 섬세한 고려 없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유아특수교육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격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을 유아 특수교사 수준에 맞추어 장애영유아에게 질 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아특수교사 양성기관인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편입이나 입학의 과정을 통해 특수 교육 전공과목, 유아교육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등을 이수하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은 기존 입학생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담보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유아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타 교사자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앞서 짚은 것처럼 유아특수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일반 초·중등교사와 함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전환 방법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게 교사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유보통합의 자격기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유아교육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학령기 아동을 아우르는 초중등교육법의 교사 자격을 개방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원)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사의 질은 양성기관에 어떠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양성기관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는 위에서도 짚은 바 있는 것처럼 법률에 의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을 계기로 하여 유아교육법의 교사 자격 기준을 넓히고, 그 과정에서 유아특수 교사를 발판으로 삼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 자격의 기준까지 넓히게 된다면, 앞으로 초중 등교육법에 명시된 다른 교사 자격들까지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게 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교육 격언이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3) 기존에도 포화 상태였던 유아특수교육과 배출 졸업생의 임용난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은 현재 13개의 4년제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매년 졸업생이 240명가 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도 취득 가능한데, 이는 13군데가 있으며 졸업생수는 연간 30명가량입니다. 이렇게 단순 수치로만 따져도 매년 270명의 졸업생,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유아특수교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교사로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교육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임용되는 교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 자격 통합에 대한 대안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유아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유아특수교육기관 확대 및 유아학교 설립을 통한 유아특수교육 수요 충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의 자격 통합만을 논의한다면 유보통합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하락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며, 이미 예비 유아특수교사가 충분 한 현재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알맞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 하나의 이유가 시작이자 끝일 것입니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중재를 제공하여 장애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의 확 대, 그리고 그를 위한 유아학교 내의 통합학급 적극 설치입니다.

유아학교는 지금의 유치원을 더 공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지원 체제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은 그 안에서 지금처럼 소속도 불분명한 형태로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 내의 특수교육처럼 위치를 더 명확히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장애전담 또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재소 중인 장애영유아의 수는 2022년 12월 기준 8,8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초등 입학 유예 과연령 제외, 출처 보육통계). 이 숫자 안에는 어린이집을 처음부터 희망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유치원에 입학하여 정규교육과정을 밟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교육지원청의 진단평가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해보면 유치원 진학을 위해 자필로기나긴 의견서를 적어서 제출하는 학부모의 간절함을 항상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을 받으러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정보육을 택하거나 어린 이집으로 눈길을 돌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기관, 특수학교 유치부와 특수학급의 수가 반드시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학교 내에 통합학급설치가 지금의 초중등교육처럼 더 적극적으로 확대된다면, 자연히 특수학급의 수가 늘며 유아특수교육기관 부족을 해갈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2)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특수교육과 졸업생은 현재도 연간 몇백 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사 임용을 위한 시험 경쟁률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2배수에서 4배수까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한다면, 한 해에 약 200명의 유아특수교사를 임용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200명에서 600명까지의 예비 유아특수교사가 정식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적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소하여 유아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과 보육의 상생을 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유아특수교육기관 확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특수 교사 채용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면, 장애영유아도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학급 당 교사 수 증가입니다. 장애영유아는 생활연령 상의 발달 단계를 고려했을 때, 자립도 측면에 있어 학령기 아동에 비해 통합교육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과 섬세한 지원

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법 내 학급 정원은 4명으로, 특수교사 혼자서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에서 시행한 바 있는 1학급 2교사제를 유아학교에 적용한다면 훨씬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아학교 내 특수학급이 적극 설치될 경우 운영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보통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학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선 후에 그 안으로 보육이 합류해 유아에게 교육과 보육을 조화롭게 제공하는 형태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초등돌봄과 같은 종일반의 형태로 보육이 합류하면, 장애영유아 역시 교육과 보육의 흐름에서 배제되는 일 없이다른 유아들과 동등하게 어울려서, 안정적으로 질이 확보된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Ⅲ. 결론

유아특수교육은 유아교육 내의 일부면서 특수교육의 일부이기도 한 분야입니다. 두 분야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만큼 더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 매우 일부를 살펴보며, 앞으로 유아교육 내에서 유아특수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생률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있는 지금, 더 적게 태어나 더 귀하게 가르침 받아야 할 아이들을 그만큼 충분히 귀하게 대접할 준비를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특별하게 고안되고 조정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을 과연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돌볼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 방향성이 지금 알맞게 잡혀 있는 것인지도 한 번 더 돌아볼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박신영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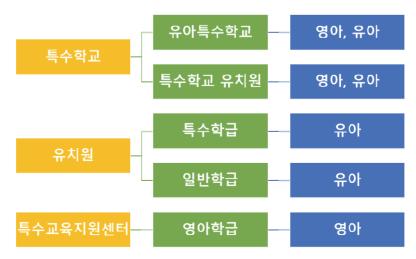
첫째, 유아학교는 개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가진 교육적 요구에 맞게 **다양한 운영형태(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유지**되어야 하며,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운영형태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일관성 있는 정책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방과후 과정 돌봄활동의 지원인력이 시·도교육청 내에서 지원**되어 교육과 돌봄활동 모두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 안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 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과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 배치하고 있다.



[그림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기관 유형 및 배치 대상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배치되는 기관인 유아특수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은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항)'으로 분류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법 제2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구분되어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근거하고 있기에 기관 유형에 따라관리체계가 상이하고, 정책 및 장학의 지원 범위가 다른 상황이다.

II.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1. 유치원의 운영 실태

유치원은 만3-5세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은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정계숙, 윤갑정, 문지애, 2017).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유치원의 일반학급 혹은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특수교사가 일정한 시간에만 통합학급을 지원하는 시간제 배치형태와 특수교사를 통합학급에 전일제로 배치하여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일제 배치통합학급이 있다(박찬웅, 김현경, 구영주, 신주원, 2021). 이 중 전일제 배치 통합학급은 초·중등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유치원만의 통합교육 모델로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공동 담임이 되어 유아의 교육 활동 전 과정을 지도하는 것이다(교육부, 2018). 즉, 특수교사 배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합교육은 전일제, 시간제, 미배치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첫째, 2022년 교육기관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수를 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특수학급에 5,291명(64.1%), 유치원 일반학급에 1.958명(23.7%)가 배치되어 있다.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비율이 각각 16.8%, 18.6%, 17.3%인 것과 비교하면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비율은 특히 높다. 이는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비율이 높지만, 특수교육대상유아는 10명 중 2~3명의 비율로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의 학급이나 특수교사의 꾸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급에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지수, 박나리, 김수연, 2023). 그 결과 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 통합교육 실행 격차와 공립유치원도 설립유형 즉, 단설과 병설 유치원 간 통합교육 실행 경험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사립(특수학교) 미설치 유치원에 통합지원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유치원마다 통합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수용도에 대한 차이가 많이 컸고요. 이미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에 배치된 유아랑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한 수용도나 이해도가 낮은 유치원에서 유아에 대한 통합교육이나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많이 느껴졌는데.(순회1-1쪽)"

"지역적 차이도 굉장히 크고 병설이랑 단설 이런 차이도 크고 시스템이 커요 차이가...(유특3-18)"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어떤 선생님들은 통합을 해주고 어떤 선생님은 안 해주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일유 1-4쪽)"

(출처) 김지수, 박나리, 김수연(2023). 완전통합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와 관리자가 인식하는 유치원 통합교육의 현재와 미래. 특수교육, 22(2), 35-67.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는 순회교육을 받지만, 서울의 경우 이러한 순회교육도 주1회, 40분 진행될 뿐이며 질적인 교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순회교사 의 역할과 실행 체제도 어려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순회교육을 일주일에 1번 2번 그렇게 하면서 개별화교육처럼 특수아이의 특별교육도 일주일에 한두번씩 꼬박꼬박 와서 해주고...(일유3-14쪽)"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가 유치원마다 다르고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는 3월부터 배치를 받았고 하나는 다니다가 중 간에 이제 특수교육 진단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미 순회교사 순번이랑 계획이 다 잡혀 있어서 얘는 (지원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는 순회를 받고 어떤 다른 학급에 배치된 아이는 순회교사 조차도 오지 않는 그런, 서로가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관리3-9쪽)"

(출처) 김지수, 박나리, 김수연(2023). 완전통합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와 관리자가 인식하는 유치원 통합교육의 현재와 미래. 특수교육, 22(2), 35-67.

둘째, 유치원알리미의 정보공시지표(2022)를 보면 대부분 특수학급이 1학급으로 인가되어 있어 유아의 연령별 배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사 1명당 통합을 지원하게 되는 통합학급의 수도 모두 달라지게 된다. 특수교사 1명이 2~3개, 심지어는 4개의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놀이 중심·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유치원 현장에서 개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들의 놀이 참여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권나현, 2022).

서지혜(2023)에 따르면 다수의 통합학급을 지원하거나 과원 배치되는 상황은 놀이 관찰과 기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여 통합학급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고 기록하는 데 있어 연령별 특수학급 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저희가 3,4,5세가 있으니까 특수학급을 연령별로 3세반, 4세반, 5세반 이렇게 있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되면 저부터도 만약 제가 만3세 특수학급을 맡는다고 하면은 만3세반 통합학급 선생님하고도 협력교수도 일어나기 쉽고, 유아들의 놀이 관찰하기도 쉽고, 통합교사도 저를 협력자로 생각할 것 같은데, 현재는 이 반 저 반 왔다 갔다 하니까 일과의 인과성이 없잖아요... (A-17-829-835)"

"병설은 대부분 혼합연령 특수학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놀이지원도 할 수 없을뿐더러 놀이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다영히 놀이기록도 못하게 되거든요... (C-51-2520-2522)"

(출처) 서지혜(2023). 공립유치원 유아특수교사의 특수교육대상유아 놀이기록 경험.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2. 특수학교의 운영 실태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만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다. 주로 장애 정도가 중도인 학생들을 대 상으로 유아특수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으로 구분된다(김현숙, 이병인, 2012; 최평임, 2009). 같은 '특수학교'이면서도 학교의 크기나 운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유아특수학교는 영유아기 특수교 육대상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과 달리 특수학교 유치원은 영·유·초·중·고·전 공과의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따라서 특수학교 유치원은 커다란 학교의 소 수 집단으로서 영유아기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나 사업을 진행하기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영유아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김현숙, 이병 인(2012)에 따르면 특수학교 유치원 중 현장학습을 유치원이 별도로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29.0%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이 초등과정에 소속되어 행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둘째, 다른 기관들과 달리 예산의 편성 및 사용도 다르게 이루어지다보니 영유아기 특수교육대 상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비용 또한 타 교육기관에 비해 적은 실정이다.

"특수학교에서도 소수고 유치원에 가도 소수고 제가 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초·중·고 선생님들한테 밀리는 실정이고... (1교사)"

"학생 수가 관리자가 보기에는 초·중·고에 비해 많이 적으니까 예산을 줄이라고 하셔서...(K교사)"

"유치원이 특수학교 내에서 예산을 받을 근거가 없다보니까 학교 배려가 없으면 유치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선배 선생님들께서...(I교사)"

(출처) 홍은숙, 박계신, 김현숙(2022).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경험과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2(3),1-30.

셋째, 특수학교로 분류되다 보니 유치원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발송되는 공문이나 지원이 제대로 교육기관에 전달되지 않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교육 지원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기에 특수학교 유치원은 유치원에도 특수학교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행·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태

장애영아는 무상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09년 288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742명까지 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하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여 2022년도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영아는 총 359명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016; 2022). 장애영아가 가장 많았던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51.6%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급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2010년도 장애영아가 배치된 학급은 70학급에서 2018년도 124학급까지 증가하였지만 2022년도에는 98학급으로 2018년 기준 26학급이 감축되었다. 특히, 특수학교는 2018년 대비 5학급 감축인 것에 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은 21학급이 감축되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조혜진, 2022). 이렇게 대상자, 학급수의 감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이 같은 '영아학급'이면서도 운영에서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학급 인가 형식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22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영아학급과 장애영 아의 수는 각 98학급과 359명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전체의 1/3이 넘는 수가 서울과 경기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밀집되어 있다. 총 98개의 영아학급 중 서울과 경기지역에 37.7%가 설치되어 있고, 359명의 장애영아 중 131명, 36.4%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교육부, 2022) 그러나, 서울은 '영아교실'로 불리며 학급 인가를 받지 못해 인원 제한 없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고 있다. 즉, 서울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없어 유아특수교사 1명이 20명 정도 되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박은혜, 2023). 반면, 경기도는 '영아학급'으로 인가가 되어 한 학급 당 4명의 영아를 배치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이를 보인다 (조혜진, 2022).

둘째, 서울의 경우 영아학급은 센터 방문교육, 통신교육, 가정교육, 체험교육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지원하나(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경기도는 영아순회교육 방침을 제시하며 주당 수업 시간, 1교시 수업 시간 및 영아 1인당 수업 횟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22).

서울은 학부모가 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과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교육내용을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통신교육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교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순회 방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도 운영의 방법이모두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매주 이제 달에는 3번 제 수업이 있었고 특수교사 수업이 있었고 가족 그 체험 프로그램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매주 매주 달에 세 번 그래서 금요일마다 통신교육 했었고, 소요시간은 제가 하는 수업도 그렇고 체험프로그램도 40분 했었어요(A 7: 285-288)"

"(영아교실은)1 ~ 2회 정도로 안내를 드리는데 다들 각자 치료가 워낙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했었고 시간은 한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부모님 상담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총 시간은 한 1시간 2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B 21: 830-834)"

"영아교실 내방 교육은 주 1회 그리고 통신 교육은.. 통신 교육도 주 1회 하게끔 계획을 해서 나가고 소요 시간은 내방 수업하셨을 때 90분 기준..(D 39: 1599-1601)."

(출처) 박은혜(2023).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 관한 인식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서울지역 특수교육지 원센터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것은 영아교실과 순회교육이다. 그러나, 센터에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초등이나 중등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유 치원으로 순회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뿐 아니라 담당 교사에게도 곤란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치원 모두 같은 이름 아래 운영되고 있더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운영의 속사정은 저마다 다르며 운영의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4. 방과후 과정 돌봄활동(이하 방과후 과정)의 운영 실태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정) 6항에 따르면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하며, 유아교육법 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학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 당 1일 이상 추기로 배치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역시 방과후 과정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참 여하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전국의 71명의 유아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과후 과정 참여 형태는 다음과 같았다.

〈표 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과후 과정 참여 형태

참여 형태	빈도(<i>N</i>)	백분율(%)
특수 방과후 과정에 참여	36	50.7%
유치원 일반 방과후 과정에 참여	25	35.2
일반유아를 위한 방과후 과정만 있어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방과후 과정 미참여	4	5.6
중복지원 불가로 바우처 지원 선택, 방과후 과정(돌봄활동) 미참여	2	2.9
기타	4	5.6
합계	71	100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절반은 특수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35.2%는 일반 방과후 과정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5%의 특수교육대상유아는 기관 혹은 정책적 사정으로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1명의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일반 유아의 경우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였을 때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가 1명도 없는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유아특수교사들은 신청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모두 선정되지 않는 상황, 참여할 학급과 지원인력이 없는 실정,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이동하여 참여하는 경우(행복한 울타리)를 예로 들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과후 과정의 실태를 꼬집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방과후 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 〈표 2〉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2〉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방과후 과정 운영의 어려움

참여 형태	빈도(<i>N</i>)	백분율(%)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방과후 과정 내 보조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52	73.2
장애 정도나 특성으로 인한 방과후 과정 참여 거부로 인한 어려움	41	57.7
일반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의 거부로 인한 어려움	40	56.3
방학 중 일반 방과후 과정 참여의 어려움	40	56.3
방과후 전담교사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 (예: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함)	37	52.1
시간제기간제 교사 또는 강사 채용의 어려움	35	49.3
 합계	245	344.9*

^{*} 케이스 백분율 적용

유아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방과후 과정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조인력 부족으로 응답하였고, 장애 정도나 특성, 전담교사의 거부로 인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 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며 현장의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방과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 반방과후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지원인력의 부족(지도사가 있으나 거부가 매우 심한 상황. 법제처에서 2017년 에도 공문이 내려왔지만 노조의 힘이 너무 세서 법제처의 해석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움)과 가장 큰 장애인식의 문제입니다. (A교사)"

"교육과정유아와 방과후과정 유아의 차별없이 교육과정을 하는 유아라면(특수교육대상유아 포함 원반 소속 모든 유아) 동등하게 방과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적인 부분의 개선이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교사)" "특수교육 종일반에 선정되어도 종일반강사 외에 보조인력이 없어 통합교육은 시도도 못하고, 돌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C교사)"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예산을 따로 마련해주어 일반 방과후과정 예산과 함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람. 지원인력을 특수학급에 한해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과후 특히 방학 중에 일반학급에서 통합할 수 있기를 바람. (D 교사)"

특히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과후 참여를 위한 국가 정책적인 개선점에 대한 응답에서 방과후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가 63명(88.7%)이고, 방과후 전담(교)사 및 관리자의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9명(54.9%),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예산편성 15명(21.1%)로 나타나 어려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위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의 차별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유치원 유아수용계획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하지 않는 것과 과거 정원 외 배치를 통해 유치원 입학 자체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의무교육대상자면서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입학의 높은 진입장벽은 공간을 사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정중하게 거부하는 유치원 교육구성원들의 낮은 장애인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방과후과정도 특수방과후가 별도로 없으니 다른 기관으로 입학을 권유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방과후 설치 이전에 해당 유치원 소속 유아라는 점을 교육자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 보장에서 교육구성원이 놓친 유아의 권리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유아라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할 동등한 권리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포기하게 할 권리는 교육구성원 누구에게도 없다.

Ⅲ. 동등한 교육의 질 보장 필요

지난 2023년 7월 14일 교육부와 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이들의 건 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공동선언 하였다. 그러나 보도자료는 온통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을

위한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치원 내 특수학급 등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다. 이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의 질을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앞서 다양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기준이나 방침이 명확하지 않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현장의 공백이 발견되나 유아특수교사들은 그 공백을 꼼꼼히 채우며 양질의 유아특수교육을 실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고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 분야이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유아기 발달 특성뿐 아니라 각 장애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 두 가지를 결합하여 교육에 녹여내는 일련의 과정이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의 특성 속에서 특수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 및 순회교육,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등 다양한 형태가 유지되어야 하나, 각 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통일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이름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을 살펴보면 운영의 실태는 천차만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별,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특수교육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장점을 모아 통일된 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유치원 특수학급도 유아특수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한 특수교사가 한 통합학급을 밀도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1:1 협력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더공감 교실'을 시범 운영하며 1:1 협력 환경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마다 연령별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연령별 1:1 통합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 ② 특수학교의 경우 특수학교 유치원을 병설유치원의 개념으로 보아 유아특수학교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며 유아기에 필요한 특수교육 사업 및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수학교 유치원에도 다양한 유아교육 관련 사업이 수혜되어야 할 것이다.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모든 지역의 영아교실을 정식 학급으로 인가하여 한 학급 당 네 명의 영아를 가정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각 유아의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 기관 유형마다 운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육적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이 개선되어 교육과 <u>돌봄활동</u> 모두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방과후 과정 역시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보장되어 있으나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기반을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에 두고 있고,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선정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3~5세) 학급 당 매월 10만원의 방과후 과정 학급운영비'를 지원한다지만, 이러한 정책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방과후 과정도 수혜되는지는 따져 물어 확인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선언된 공동선언문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행복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기는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이며,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유아기 특수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수 확충뿐 아니라 현 실태를 돌아보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해 특수 학급 신증설 및 특수학급 정원 준수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유보통합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운 요즘, 의무교육대상자를 소홀히 하면서 국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하기는 어렵다.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라고 하는 교육부의 슬로건처럼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이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를 고려하며 모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 (2022). 2022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안).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2015). 2015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6). 2016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8). 2018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 2022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권나현 (2022). 공립 유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실행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대한 질적연구. 미간행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김지수, 박나리, 김수연(2023). 완전통합교육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와 관리자가 인식하는 유치원 통합교육의 현재와 미래. 특수교육, 22(2), 35-67.

김현숙, 이병인(2012). 특수학교 유치원의 의무교육 질적 수행을 위한 인가 및 교육과정 편성·운 영 실태 조사. 유아특수교육연구, 12(1), 111-135.

박은혜(2023).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 관한 인식 및 실행 과정에

- 대한 질적 연구-서울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 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 박찬웅, 김현경, 구영주, 신주원 (2021). 유치원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유형에 따른 유치원교 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 및 만족도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2(4), 43-67.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 2022 서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지혜(2023). 공립유치원 유아특수교사의 특수교육대상유아 놀이기록 경험.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 정계숙, 윤갑정, 문지애 (2017). 유아교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문화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6(2), 103-129.
- 조혜진 (2023).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운영실태 및 지원요구-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 최평임 (2009). 발달장애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발달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울.
- 흥은숙, 박계신, 김현숙(2022).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경험과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2(3),1-30.
- 홍준헌 (2023. 7. 14.). "유보통합 반드시 실현"... 교육부·복지부·시도지사협·시도교육감협 공동 선언(전문). 매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5153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김현숙 전국유아특수 교사연합회 회장

2차 KICCE 정책 토론회 릴레이 토론회 2차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제안

- 장애 영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무상교육'대상자임.
- 영아기 조기개입의 중요성, 가족지원의 필요성은 영아가 **체계적인 교육의 대상**임을 나타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는

- 첫째, 유아교육법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 를 추가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영아를 교육대상으로 지정
- 둘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영아 학급인가 기준 및 개별화가족지원 계획에 근거한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 강화
- 셋째, 교육부-교육청 산하에서 장애영아 조기개입이 충실히 실행되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배치

장애영아 관련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4장 영유아 및 초 · 중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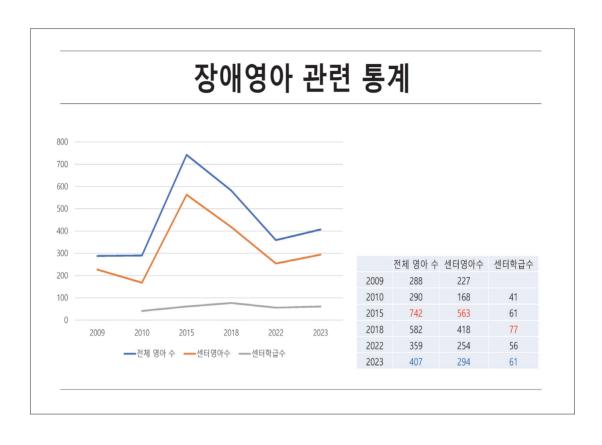
- □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 해화 수 이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 □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 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9. 3. 23., 2019. 12. 10., 2021. 7. 20.〉

장애영아 관련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 □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u>법 제18조제2항</u>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u>법 제18조제2항</u>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u>「특수학교시설・설비기</u> 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 ⑥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u>「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u>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조기개입의 필요

- ① 아동의 초기 환경적 상호작용의 중요성
- ② 기존의 장애가 가져올 수 있는 2차적인 장애나 부정적인 영향예방
- ③ 장애아동이나 장애위험아동의 가족들이 필요를 인식
- ④ 조기개입이 사회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혜택 고려

장애영아 학급운영의 문제 및 개선방안

1) 학급 설치 기준과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급별로 차이

- 서울, 경기 중 4명 배치 13개(37.1%), 3명 배치 9개(25.7%), 5명 이상 배치 8개(22.9%)
- 13개 기관은 영아학급 소속은 아니나 장애 영아가 배치되어 있음.
- "그래서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어 요 (A교사)

학급 설치기준과 인원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김미라, 2013; 백유순, 이명희, 2014; 이민지, 2023; 조혜진, 2022).

-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1조(입학)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 추가
- →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 영아 학급에 대한 내용 추가 유아학교 내 장애영아 학급의 법적 근거 마련

연구 결과 출처: 조혜진(2022), 박은혜(2023)

장애영아 학급운영의 문제 및 개선방안

2) 센터 내 영아학급 교실 확보

- 서울, 경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교실이 없는 경우가 12개(34.3%), 규격과 용도가 미흡한 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11개(31.4%).
- "시설이 좀 낙후되기도 해가지고 외부에서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다들 이것도 교실이라 할 수 있냐 약간 다 이런 반응이셨어요(B교사)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보통 교실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법제처, 2023), 최소한의 교육환경조차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 시급(조혜진, 2022)

- → 법적 근거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예산 편성 시 장애영아 학급 운영 항목 및 예산 기준마련
-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 필요

연구 결과 출처: 조혜진(2022), 박은혜(2023)

장애영아 학급운영의 문제 및 개선방안

3) 교육과정 및 IFSP 실행 근거 확보

- 서울, 경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13개(37.1%)에서 교육감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 부재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부재를 어려움으로 선택한 유아특수교사가 21명(60.0%)임.
- "법에는 (IFSP가) 명확하게 없으니까 이게 뭔가 결정하거나 할 때 무슨 기준을 참고해서 해야 될 지도 모르는 것이 너무 애 매했던 것 같고(B교사)"
- "가족지원도 그냥 청마다 또 지역마다 틀도 다 다르고 개별화처럼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해서… 실행하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나 이런 것이 달라진다…(D교사)"

장애영아 교육에서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준,

IFSP 구성요소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김은영, 이미숙, 한민경, 2020: 주정권, 곽승철, 2016: 박은혜, 2023)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1항 개정을 통해 장애영아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에 개별화가족지워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제정

연구 결과 출처: 조혜진(2022), 박은혜(2023)

장애영아 학급운영의 문제 및 개선방안

4) 영아학급 운영 방법 개선

- 서울, 경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은 통신교육(74.3%), 가정교육(71.4%)가 가장 많음. 비대면 활동 형태의 비율이 높음
- "영아를 직접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IFSP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E교사)"
- "학생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잠깐만의 관찰로 아이에 대한 모든 교육적 요구나 필요 서비스를 제 공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교사)"

장애유형 및 정도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영아에게 적합하게 혼합된 형태의 서비스 유형 마련 필요

(김성애, 이정현, 박현옥, 이병인, 2011; 김지연, 2021; 백유순, 이명희, 2014; 이민지, 2023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에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제정

연구 결과 출처: 조혜진(2022), 박은혜(2023)

장애영아 학급운영의 문제 및 개선방안

5) 가족의 인식개선

"참여하고자 하면은 막 다 하려고 하는데 정말 관심이 없으면 굳센카드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안 오고···(B교사)" "전화가 아예 안되는 분들도 좀 많고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해도 어려운.. 그러니까 회신이 안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A교사")

IFSP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보고.
가족들의 IFSP에 대한 낮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IFSP가 장애영아와 그들의 가족이 가지는 권리임을 안내하는 국가차원의 홍보 필요

(김성애 외, 2011; 백유순, 이명희, 2014; 조혜진, 2022)

→ 특수교육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1항에 IFSP에 근거한 적합한 조기교육의 필요를 교육장에게 요구하고, IFSP에 근거한 적합한 교육이 가족의 권리임을 안내하는 내용 추가

연구 결과 출처: 조혜진(2022), 박은혜(2023)

장애영아 학급운영의 문제 및 개선방안

6) 영아학급 담당 교사의 업무 과정 해소 및 역량 강화

- 서울, 경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담당 교사 중 97.1%가 영아학급 외 다른 업무를 맡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전담 특수교사가 영아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 10.9%
- "사실 내가 영아교사지만 영아교사의 정체성도 있지만 다른 진단평가 업무도 해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 업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영아에 온전히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A교사)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력이 많이 배치돼서 영아 담당 교사가 영아 학급만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교사)
- "담당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B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 증원 필요(김성애 외, 2011; 조혜진, 2022; 박소영, 윤송하, 유장순, 2022; 박은혜, 2023).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원 필요(김은영 외, 2020; 박현옥, 2009; 이민지, 2023).

-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2항에 따라 영아학급 교원 배치에 관한 시도교육청 규정 개정
-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4항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현행 법 유지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교사 배치

연구 결과 출처: 조혜진(2022), 박은혜(2023), 백유순, 이명희92014)

참고문헌

교육부 (2009). **2009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0). **2010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5). **2015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8). **2018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 **2022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 **2023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김성애, 이정현, 박현옥, 이병인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장애영아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 **지적장애연구, 13**(2), 123-158.

김미라 (2013).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서울지역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김은영, 이미숙, 한민경 (2020). 장애영아 조기중재 제공자의 경험과 지원 요구.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논집, 25(1), 69-88.

김지연 (2021).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소고-순회교육 개념 재점검 및 2021 특수교육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7**(1), 1-22.

이민지 (202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아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북.

조혜진 (2023).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의 운영실태 및 지원요구-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주정권, 곽승철 (2016).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교실의 수업운영과 서비스지원 실태. **특수교육논집, 20**(1), 23-42.

박소영, 윤송하, 유장순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역할과 지원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2**(2), 151-173.

박은혜 (2023).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에 관한 인식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서울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경기.

박현옥 (2009). 0-2세 장애영아의 조기중재 실행요소 및 전문가 자격 기준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9**(2), 117-138.

백유순, 이명희 (2014).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장애영아 지원 실태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4(1), 97-131.

법제처 (20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세종: 법제처

법제처 (20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세종: 법제처



종합토론

- ▶ 이은미 ₁ 청주 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연합회 회장
- ▶ 신인수 | 수도사랑의 학교 교장
- ▶ 정길순 |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 ▶ 이병승 ₁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연구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 학교를 제안하다 발표에 대한 토론문

이은미

청주 오름벗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연합회 회장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교육 체계가 올바르게 성립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네 분의 발표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깊이 동의합니다. 유아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 영유아에게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이들에게 처음으로 제공되는 공교육이라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발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할 유아특수교육,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유아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여전히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첫째,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 교육부에서 말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패러다임에 동의합니다. '장애아'라는 용어로 한계성에 초점을 맞춰 제한된 능력을 계발하고 정상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능력이 상이한 다양한 집단(혹은 개인)의 교육적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고, 결과의 동일함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교육,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교육현장이 필요합니다. 장애뿐 아니라 발달지체 또는 발달이 지연된 경계선상의 아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적합합니다.

유보통합에서 유아학교는 이런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우리 아이들도 구성원으로서 즐거운 유치원, 행복한 특수학교 유치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큰 요구는 바로 '집앞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아침마다 한 시간씩 운전을 해서 등원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통학해야 하는 아이는 업고 다녀야 하는 동생이 있을 경우 비 오는 날의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원은 부모에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자녀의 특성상 보행과 이동이 어려운 경우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위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장된 교육기관 근거리 배치 원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특수학급 확대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설치를 통해 기관 선택이 다양해지고, 가까운 곳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둘째, 교사자격에 대한 주제발표문을 읽고 학부모로서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유치원에서 만나던 특수선생님의 자격이 유아교육법에 없다는 점에서 놀랐고, 4년제 대학을 이수하고, 102학점을 통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양쪽의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과 자격증도 아니고 자격확인서를 가진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같은 범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유보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아교육법을 찾아보니 제15조(특수학교 등)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고, '교사자격기준'에 특수교사에 대한 자격은 없으니 이를 실행할 주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이 유아교육법에도 함께 명시됨으로써 유치원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의 질은 상향 평준화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장애영유아라는 명칭 개선이 필요하듯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들도 특수교육을 전공한 유아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발표자들께서 언급하셨듯 현재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된 운영 체계는 각 지역마다, 지역 안에서도 각 관내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과 그 보호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천차만별인 운영실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영 체계를 통일하여 개별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합니다.

발달 단계에 있어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특수교육은 그 아동의 평생을 죄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이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0세에서 만2세 사이에 장애영아로 선정되는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특수교육적 지원이 시급한 아이들입니다. 아이의 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적 지원 뿐 아니라 아이를 잘 양육하고 상호작용하는 유능한 가족이 되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영아도 가정 방문형 순회교육만이 아니라 유아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대로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가,

전일제로 배치된 집과 가까운 유치원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공동담임제로 협력교수를 하는 양질의 통합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유보통합 한다면서 끼워넣기의 특수교육이 아닌 모든 유아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특수교육이기를 바랍니다.

보육과 교육구성원 모두 우리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또래 친구들에게 도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동등한 아이들이라는 인간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며 각 발표자께서 강조해주신 내용 모두 정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들이었다고 생각하며 다른 참여자 여러분들의 더 좋은 생각도 함께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유보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까지 꼭 포함하여 모든 영유아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체계 구축을 이뤘으면 합니다. 반드시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보통합 정책이어야 하며, 자녀들이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의무교육의 방향

신인수 수도사랑의 학교 교장

반갑습니다. 저는 80년대 초 특수교육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유(아)치원교육과 특수학교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신인수라고 합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과 2007년 장애인등에 의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UN 장애인인권협약 등을 경험하면 지금 2023년 우리아이들의 교육과 성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영유아들의 교육은 무상과 의무교육으로 체계적인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교육의 혜택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무교육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당연한 교육의 권리인데도 일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만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영유아들은 특수학교와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장애전담어린이집(3,330명)과. 장애통합어린이집(4889명)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장애 영유아들에게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의무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비록 약간의 핸디캡과 불편함이었더라도 함께 살아갈 미래사회를 위해 국가와 국민. 정부와 여러 교육기관과 단체 등에서 연구하고 준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내실있는 무상 의무교육의 확충과 실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 받기 위해 국가책임의 공공 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둘째. 공공성을 강화하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교육실현을 위해, 교사(자격), 교육과정, 교육환경과 정책 등에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원화되었던 교육과 보육체계를 단시간에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무 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들에게 관심 기우리며, 이를 실행하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과 특수교육전문가들은 서로 긴밀한 소통과 관계를 통해 장애영유아들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계획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한 요구가 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교육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학교교육은 교사. 학생. 교육과정(교육내용) 및 환경(학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35년 이상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교육하면서 느낀 것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사'라

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하는 교사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양성되어져야 하며, 거기에다 '사람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춘 특수교사'이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육의 장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걱정 없는 학교문화를 공교육이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장애학생교육은 유아뿐 아니라 영아교육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영아를 무상교육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단순한 보육의 관점이 아닌 전문적이고체계적인 교육으로 인해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그 가족가지 지원하는 것이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입니다. 현재 전국 유아특수학교에서도 무상교육인 영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특수교사들이장애영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생활, 보육의 관점을 내포하는 교육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영아교육은 장차 통합적인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우리 아이들의 첫 걸음이며,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특수교육대상영아의 조기발견과 중재'를 위해 내실 있는 영아교육의 실현을 위해주춧돌을 잘 쌓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분트 라는 말처럼. 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렇게 모두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한한국의 멋진 교육미래와 통합된 사회 속에서의 행복한 우리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토론문

정길순 대전특수교육 지원센터 교사

안녕하십니까?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아특수교사 정길순입니다.

주제발표 내용에 동의합니다. 교육과 보육이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과제들이라고 생각합 니다. 주제발표 중심 토론을 진행하기전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현재도 교육현장과 보육현 장 모두 사실상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이 있고, 보 육은 보호하고 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부분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구분해 서 어느 한 가지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립유치원을 예로 들면 오전시간은 교육하고 기르는 과정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오후시간은 보호하고 기르는 과정에 중점을 둔 유치 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운영교사와 방과후 과정 담당자의 자격기준, 근무시간, 보수등에서 차이가 있고 습니다. 교육이 제공해야 할 부분과 보육이 제공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자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 보 육은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훈련과 정과 하는 일이 다른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 시 점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 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 할 수 있도록 법체제와 근무조건 등 선결과제를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 지부로 국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부터 통합하여 관리 소통체계를 하나로 하는 것이 가장 필 요합니다. 통합된 국가 기관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제시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여 교육과 보육이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에 게 교육까지 하도록 하는 것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모 두 제공해야 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과 보육은 각자가 중요하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을 통합하고 교육과 보육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과 유아교육 양쪽에서 장애를 가진 특수교 육대상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 어느쪽에서도 특수교육대상아동에게 제공 되는 교육 및 보육의 방향과 교사의 질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 다. 이에 주제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아동을 위한 교육과 보 육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아동 학급 형태 및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대상아동 배치 환경 확장을 위한 유아학교 설립, 교사의 자격기준 정비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학급 형태 및 교육과정 운영, 교사 근무형태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에서 영아 학급운영 실태를 보면 학급 설치기준과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급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소속으로 설치된 경우는 영아학급으로 부르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는 영아교육지원실로 부르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근무 형태에서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은 표준보육과정을 교사가 아동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아를 직접 관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나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현장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에서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유치원 교육과정이 있고, 누리과정을 사용하도록 지침이 있어 영아교육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아동의 교육과정 운영, 학급형태, 교사 근무형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일성 있는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보통합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영유아를 위 한 배치 형태의 다양화입니다. 영유아기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통합교육을 원하고 또한 그 방법 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에게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합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만을 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변자립, 착석, 주의집중, 문제행동 중재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만이 최선이 아닌 예를 들어보면 역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수교사가 일반학급 아동과 그 학급에 포함된 특수교육대 상 영유아의 수업을 진행할 때 다른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실무원 선생님이 아동들의 손을 잡고 강당을 배회하는 경우, 통합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특 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배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라는 이유로 기본적 교육권을 박탈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통합학급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라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통합상황으로 입학하고 그 안에서 결정적 시 기를 허비하여 아동의 삶에 중대한 손실을 입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특수학교에서 유치원 과정은 매우 소수 학급으로 유치원 특색을 살린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이든 분리교육이든 아동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사의 자격 기준 정비입니다. 유아특수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법적 근거와 자격을 받기 위한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유아특수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자격기준이 있으며,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총 10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에 자격기준이 있으며,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총 7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자격기준이 있으며, 고등학교과정 이상을 졸업한 자가 51학점이상 관련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시행령에 자격기준이 있으며, 2012년 8월 5일 이후 입학 및 편입학자 기준으로 보육교사 기본 이수학점인 51학점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학점 24학점을 추가하여 총 75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격기준을 제시하는 관련법이 각각 다르고, 특히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학점으로 단순 비교할 경우 최소 27학점 차이를 보이며, 장애관련 이수과목, 교직과목 이수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준비없이 통합한다면 특수교육대상아동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격에 대한 통합을 할 경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유아특수교사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공정성이 담보된 입학절차를 통하여 입학 후 특수교육, 유아교육,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의 질 보장, 유치원 특수교사의 전문성 유지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연구관

MEMO

MEMO

MEMO

MEMO	
	_
	_

2차 KICCE 정책토론회 릴레이 토론회 2차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2차 KICCE 정책토론회

릴레이 토론회 2차

특수교육대상 영유이를 위한 유이학교를 제안하다!

2023. 7. 28.(급) 15:00 - 18:00 | 국회 제5간담회의실

주최 ②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주 관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후 원 ② 교육부, 실천교육교사모임, 육아방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유아특수학교장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단체명 가나다순)

